



#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

[2015-2017]

2015. 10. 16.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
## 목 차

- 1. 추진 배경 ..... 1
- 2. 한국 보험산업의 시대적 변천 ..... 2
- 3. 보험산업의 현주소 및 문제점 ..... 4
- 4.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기본방향 ..... 7
- 5.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 ..... 8
  - 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..... 8
  - 나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..... 11
  - 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..... 15
  - 라. 판매채널 전면 혁신 ..... 17
  - 마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..... 19
- 6. 향후 추진 계획 ..... 22

※ 별첨 :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

## 1 추진 배경

- 2000년대 이후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\*를 지속하며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

\* '00년 이후 총자산 444% 증가, 연평균 자산증가율 13.0% 달성

- 이러한 양적 성장으로 '14년말 현재 국내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 비중은 자산기준 19.8%, 종사자기준으로 55.1% 수준에 달함

\* 14년말 보험권 자산 862조원(은행 2,558조원), 종사자 44만명(은행 12만명)

- 특히, 보험산업은 자동차보험·실손의료보험·화재보험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중

\* 14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천만대, 실손의료보험 3천만명 가입 등

- 그러나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저성장·저금리·고령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이 미흡하고 성장동력이 약화

- (감독·규제) 다른 산업에 비해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가 여전히 많아 시장의 창의성·역동성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

- (보험회사) 양적 경쟁에 치우쳐 상품개발 및 자산·부채관리 역량 개발을 소홀히 취급한 결과 핵심 경쟁력 취약

- (소비자)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증가 및 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전반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

⇒ 한국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냉철히 점검하고, 이를 토대로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·추진할 필요

## 2 한국 보험산업의 시대적 변천

### 가. 보험산업 태동/정착기 (~1980년중반)

- '50년대말 국내 도입된 보험산업은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8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성장

- 특히, '70년대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생명 및 손해보험 산업이 급성장

\* GDP대비 생보 수입보험료 비중(%) : (60년)0.16 → (70년)0.54 → (80년)1.76

\* GDP대비 손보 수입보험료 비중(%) : (60년)0.22 → (70년)0.53 → (80년)1.13

- 이 시기에 보험사의 경험·역량이 부족하고 판매·건전성 감독 체계도 미비하였으나, 직접적 규제\*를 통해 이를 보완

\* 당시 재무부(보험감독원)를 통한 규제(예시)

: (58년) 예정이율을 연 12%로 고정, (81년) 예정사업비 총한도 규제 등

### 나. 보험산업 개방/양적 성장기(1980년중반~1999년)

- '80년대 초반부터 대외개방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한단계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

- '87년 라이나생명보험의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, '92년 자동차 보험시장 개방 등 순차적인 보험시장 대외개방 추진

\* 손해보험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 주둔으로 외국 손해보험사 사무소 개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외개방

-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험사간 외형 성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

○ **보험회사의 시장 신규진입 대폭 허용**

- '86년 생보사 신설 허가기준 발표 이후 생보사 중심으로 많은 수의 보험회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

\* 89~93년중 생보사 22개사 신설, 손보사 1개사 신설

○ 시장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**상품·가격 규제완화 조치 시행**

- 이에 따라 '93.12월 「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계획」이 발표되고, 이후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\*가 순차적으로 단행

\* (94년)유지비 자유화, (97년)예정위험율 자유화, (00년)예정이율 자유화 등

○ 이 시기에 제3보험에 대한 생·손보 겸업 허용 등으로 **다양한 상품이 소개되고 법인대리점등 새로운 채널 등장**

⇒ 그 결과 제살각기 과당경쟁 등으로 부실경영이 한도를 넘어서며 '97년말 경제위기 과정에서 **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행**

\* (생보사) 12개사 퇴출, (손보사) 2개사 퇴출, (보증보험) 대한한국보증 합병

**라. 보험산업 제2차 양적 성장기 (2000년~현재)**

□ 구조조정기를 거쳐 '00년중반 이후 **급속한 양적 성장 실현**

\* 04~14년중 생보/손보는 보험료 기준 연평균 각각 7.5%, 12.7% 성장

\* 총자산 : (08년) 395조 → (14년) 862조원 / 가구당 보험가입율 97.5%

○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지난 수년간 폭넓게 구축된 판매채널과 실손·변액 보험 등 보험 인프라가 이러한 양적 급성장을 견인

□ 그러나 이 과정에서 **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**

○ 보험회사 부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**다양한 규제가 설계되면서 경쟁을 통한 시장 역동성의 결핍들로 작용**

**3 보험산업의 현주소 및 문제점**

**가. 상품제조 단계 : 자율성·다양성 不在**

□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 및 업계의 현실안주 관행 등으로 **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상품공급 기능 취약**

○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또는 판매후보고 제도이나,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

○ 보험료 관련 **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도 여전히 상존**

□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상품공급 미흡

○ 특히, 손해보험은 고유영역인 일반보험의 비중이 낮은 반면, 판매가 용이하며 단기수익성이 높은 장기상품 판매에 치중

\* 손보사 장기상품 취급비중(수입보험료 기준) : (06년) 54.1% → (14년) 71.3%

□ 보험회사들은 **새로운 상품 경쟁보다는 마케팅 경쟁에 치중**

○ 이러한 경쟁 부재는 산업전반의 정체를 유발하여 타업종과 달리 시장점유율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역동성 상실

\* 생보 : (05) 삼성(33%)/한화(17%)/교보(16%) → (14) 삼성(28%)/한화(14%)/교보(12%)

\* 손보 : (05) 삼성(30%)/현대(15%)/동부(14%) → (14) 삼성(27%)/현대(17%)/동부(15%)

\* 은행 : (05) 국민(16%)/농협(11%)/우리(11%) → (14) 국민(13%)/우리(12%)/신한(12%)

**나. 상품판매 단계 : 과당경쟁 및 영업질서 문란**

□ 상품판매 단계에서의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**영업 질서 훼손**

○ 유사상품만 공급되는 상황에서 실적 위주 과당경쟁은 불완전 판매, 철세설계사 문제\* 등을 야기하여 보험신뢰도 저하로 귀결

\* 설계사 1년 정착률(%) : 한국 40% 이하, 캐나다 85%, 미국 65% 등

□ “아날로그 → 디지털”로의 시대 변화에 걸맞는 **저비용·고효율 채널이 개발·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**

- 온라인 특성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절차, 상품간 비교공시 취약 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판매 인프라 미흡

**다. 자산운용 단계 : 과잉규제 및 자체 경쟁력 취약**

□ 각종 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가 상존하고, 보험회사 스스로 부채 특성에 맞는 **효과적·선진적 자산운용 능력도 취약**

- 안정적 대체수익원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고, 채권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에 한계

□ 그 결과 아직까지 ‘국제보험그룹’(IAIG)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**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 지속**

\* International Active Insurance Groups : IAIS가 정한 기준(총자산 500억\$, 수입보험료 100억\$, 진출국가 3개국, 해외영업비중 10% 이상)을 충족하는 회사

-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% 미만 회사가 20개사(생보 25社중 12社, 손보 18社중 8社) 수준에 달함

**라. 국민경제에서 보험업의 위상 : 부정적 인식 확산**

□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하

- 불완전 판매,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속 악화되는 상황

\* 금융업권별 소비자 신뢰도 : 은행 8.20, 우체국 7.58, **보험 7.44**, 금투 6.20 (보험연구원, '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)

※ (참고) 글로벌 컨설팅사의 보험관련 신뢰도 조사 결과  
▶ 캡 제미니(13년) 보험만족도 조사 : 한국 15%(1위 미국 51%), 30위/30개국  
▶ 언스트&영(12년)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관련한 조사 : 한국 26%(1위 인도네시아 71%), 7위/7개국

□ 가입절차 복잡성, 판매과정 설명 부족,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 증가 등으로 **소비자 불신 및 보험민원\*이 지속 증가 추세**

\* 14년 금감원 접수 보험민원의 44.9%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 
\* (10년) 35,907건 → (13년) 39,345건 → (14년) 44,054건 (전년대비 12.0%↑)

**마. 중장기 경쟁력 훼손 : 환경변화 대응노력 미흡**

□ 고령화·겸업화 등 급격한 **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부진**

- 겸업화 진전으로 보험 고유영역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, 핀테크 접목 신상품 도입 등 **신규 수익창출 개발 노력 부족**

□ 2020년 시행예정인 2단계 **IFRS4**는 보험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변혁으로 **상당한 준비가 요구되나 준비상황은 답보 상태**

⇒ 우리 보험산업이 직면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15.5월부터 민관합동 「보험업법규개정TF」를 발족하여 업계·전문가 등의 규제개선 및 보험산업 발전 관련 의견 수렴(5~9월중 총20회 회의개최)

- 이를 토대로 시행령·규정 등 금년내 개정 가능한 제도개선 **과제를 우선 추진**하고, 법개정 사항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진

※ 보험법규개정TF에서 수렴한 개혁과제  
① 현장점검반 : 보험회사 현장방문을 통해 **총 896건 건의 수렴**  
② 금융개혁자문단 : 보험업 개혁자문단 **총 52건 건의 제시**  
③ 보험업계 : 협회·개발원·연수원 등을 통해 업계의 **총 283건 건의 수렴**  
④ 기타 : 상위법상 근거없는 규정, 감독규정/시행세칙간 배분 과제 등 검토

## 4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기본방향

- 보험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**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**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
  -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 경쟁보다는 **새로운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적 경쟁을 유도**
    - \* “경쟁 촉발 → 다양한 **新상품서비스** 공급 → 소비자 선택권 제고 → 보험산업 질적 성장”의 선순환 기반 마련
  - 상품개발·판매·자산운용 관련된 규제는 **최대한 폐지**하되 소비자보호 기능은 **한층 강화**
- 이를 위해 **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**을 마련하여 ‘17년말까지 체계적·단계적으로 추진
  - (i)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**산업내 경쟁을 촉진**하고 **새롭고 다양한 상품·가격 출현을 유도**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
  - (ii)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**국민적 신뢰를 회복**함으로써 **세계 5대 보험시장으로의 도약**을 뒷받침

### <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개요 >



## 5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

### 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

#### < 현황 및 문제점 >

- 현행 법규상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 신고후 판매(“사전신고”) 하거나 또는 판매후 사후보고(“제출”)함
  - 그러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**법규 취지와 달리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됨**
-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상품개발보다는 **이미 판매중인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채널을 통해 판매**하는데 주력
  - 그 결과 **시장내 상품이 천편일률적**이고, **과도한 채널경쟁**으로 **불완전판매**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 지속

#### < 개선 방안 >

- ◆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**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**하고 **사후보고제로 전환**(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)
  - \* 14년중 사전신고 1,525건 → 약 400건으로 축소(약 70%↓) 전망
  - \* 총 상품개발건수(14년기준 8,100건)의 5%(400건)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

- 원칙적으로 현행 **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**하고, 향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·심사 기준 명확화
  - (i)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, **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**
    - 법규상 사전신고제 적용대상을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
    - 또한 생·손보 업무범위 구분을 신고기준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통제하던 겸영불가종목 규제는 시행령상 업무범위 사항으로 규율

(ii) 현행 시행령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**상품신고 심사기준의 인가제적 운영요소를 정비**

-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차단

**2]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표준약관제도\* 재정비**

\* 현재 생명/손해/질병/상해/자동차/실손의료 등 10개의 표준약관 운영중

-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**표준약관(시행세칙)을 폐지** 하고, 소비자보호 등 규제 필요사항은 **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(규정·시행세칙)**
- 다만, 실손의료·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표준약관 내용을 최소화하여 유지하되,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**표준약관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\***

\* 협회내 상품심의위원회(후술)가 표준약관(안)을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

- 「표준약관 정비 TF」\*를 구성하여 '16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 및 법규정비(안)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

\* (예) 금융위/금감원 및 보험연구원/보험개발원/보험업계 등이 참여

◆ 현행 감독규정·시행세칙에서 사전적으로 상품을 통제하고 있는 **복잡한 설계기준을 대폭 완화**

**3]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 삭제**

\* (예①) 암 90일,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

\* (예②) 1급장해의 2급장해 보험금 2배초과 금지 등 등급별 보험금 설계 제한

◆ 향후 보험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**부실상품 판매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**

**4] 법규를 위배하여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**

- 상품설계기준을 위배하여 판매된 **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변경 권고권 발동시, 사유공개 및 과징금 엄중 부과**

\* 14년 사전신고상품 1,525건중 1.5%, 자율상품 6,600건중 17.3%에 대해 상품 변경권고처분이 발동되었으나,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

-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애매모호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(시행세칙)의 위임근거 마련

**5] 사전신고제 폐지 및 표준약관 정비에 맞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(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)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**

- 각계 전문가·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「**가칭**」**상품심의위원회(협회)**를 설치·운영

\* (구성) 보험회사, 소비자단체, 심사평가원/의사협회/자동차정비업계 등 이해관계자, 학계, 보험개발원·협회 등 관련기관

- 동 위원회는 표준약관상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·조정하고 새로운 위험보장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

**6]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\* 확대**

\* 현행 「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(협회)」에 따른 배타적 사용 보장 기간을 최대 6개월 → 12개월로 확대

⇒ 소비자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**새로운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**

## 나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

### <현황 및 문제점>

- 1990년대 금리자유화와 병행 추진되었던 '93년 「보험료 자율화 조치」에 따라 현재 외견상 보험료는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결정
-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온존
  - (위험률 조정) 3년(실손 1년)마다 ±25% 범위내에서만 조정
    - \* (외국사례) 통상 10년 정도 주기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 판단, 조정폭 제한도 없음
  - (위험률 안전할증) 통계적 위험률에 30%까지 할증이 가능하며, 사후정산시 50%까지 허용
    - \* (외국사례) 위험할증에 대한 사전적·사후적 통제를 하는 OECD국가는 없음
  - (보험료 할인율·표준이율)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금감원이 정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
  - (공시이율) 공시기준이율\*의 ±20%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
    - \* (예) (운용자산이익율 4.0% + 시중금리 3.0%) / 2 = 공시기준이율 3.5%  
→ 공시이율 2.8%(-20%) ~ 4.2%(+20%)
-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매년 동일시점에 동일수준·동일폭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가격의 **확일성\***을 조장하게 되고 **소비자 선택권을 제약**
  - \* (예) ①예정이율 변동폭과 표준이율 변동폭, ②보험료 개정주기(매년 사업년도 개시일), ③생보사의 금리연동형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금리(1.5%) 등이 거의 동일한 상태

### <개선 방안>

- ◆ **타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, 적절한 보험료 산정체계 구축**
- ⑦ **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\*이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**
    - \* 현행 법규에서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, 관행적으로 참조위험률 조정기간을 감안 3년마다 조정
  - ⑧ **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(±25%) 폐지**
    - 다만,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시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**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(후술)**
  - ⑨ **새로운 위험보장상품 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((현행) 30% → (16년) 50% → (17년) 폐지)**
    - 안전할증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 적용(50%까지 허용)할 경우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현행 규제도 폐지
- ◆ **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이자율(할인율)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**
- ⑩ **표준이율\* 산출제도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**
    - \* 표준이율이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로서 금감원장이 결정(매년 1.1일 변경)
    - 그동안 표준이율이 보험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예정이율의 **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가격 확일성을 초래한 만큼, 이를 폐지하여 보험료가 자율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**

**11**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**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비**((현행) ±20% → (16년) ±30% → (17년) 폐지)

- \*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하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
- 그동안 공시이율 규제로 금리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와 시장경쟁 억제 등 부작용 발생

◆ 위험률 및 이자율(할인율) 규제 일괄 재정비에 따른 **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방안 병행 추진**

**12**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 가격규제 완화는 **2년이상 걸쳐 단계적·제한적으로 추진**

※ (참고)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안도 단계적 완화방안

- ▷ (1단계 : 16년)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한 보험료 공시 강화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안도를 소폭 인상(25%→30%)
- ※ 보험회사 자구노력 유인을 위해 사업비 인하폭만큼 위험률 추가 인상 허용 (예 : 사업비 1% 인하시 위험률 조정안도는 30% → 31%로 확대 가능)

		위험보험료	사업비	총액
기 준		10,000원	3,000원	13,000원
보험료 인상	현행(25%적용시)	12,500원	3,750원	16,250원
	개정(30%적용시)	13,000원	3,900원	16,900원
	(사업비인하시) →13,900원		→3,000원	

- ▷ (2단계 : 17년) 조정안도를 30% → 35%로 추가 확대
- ▷ (3단계 : 18년이후) 보험료 비교공시 활성화, 비급여 의료비 확인체계 개선, 보험료 변동의 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조정안도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
- ※ 이와 별도로,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등으로 특정 보험회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감감원장이 해당회사의 조정안도를 추가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*13**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**보험상품 비교·공시를 대폭 확대하여 보험료 관련 시장경쟁 유도**

- ① 금년 11월중 보험료 비교·공시 정보는 물론 보험상품 검색 기능을 장착한 **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**
- ② 내년부터 온라인 슈퍼마켓이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·공시정보 (생·손보험회)를 **인터넷 포털 및 가격비교 사이트에 전면 개방**
  - 생·손보험회가 아닌 법인의 보험료 비교·공시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·절차·책임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(감독규정 개정, 16.4월 시행)

③ 비교·공시항목으로 보험상품 보장범위지수\*를 신규 도입하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**표준화·규격화된 전용상품 개발 유도**

\* 암발생 등 특정 위험별로 표준적인 보장범위, 보장기간 등을 사전에 규정하고, 표준보장범위 대비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, 보장기간 등의 비율을 지수화

④ 다른 채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**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를 직접 공시**하여 온라인 슈퍼마켓 활성화 뒷받침

**14** 보험료 자율화에 따른 가격 덩핑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, **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**

- '16년부터 본격화될 IFRS4 2단계 도입 과정에서 부채시가평가 (LAT)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, RBC제도의 정교화 추진

⇒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, 소비자들이 **이를 손쉽게 비교·선택할 수 있는 시장풍토 조성**

## 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

### <현황 및 문제점>

- 외국인·파생상품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\*가 **효과적인 자산운용·해외투자 등에 걸림돌로 작용**

\* (예) 동일 법인 채권·주식(총자산 7%), 외국인(총자산의 30%), 파생상품(총자산의 6%), 부동산(총자산의 15%) 등

- 투자가능 외화자산범위 제한, 외국인거래기준상 불명확성 및 외환·파생상품의 열거주의 규제 등도 **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저해**

-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후순위채권에 비해 자본성이 우수함에도 동일수준의 발행요건이 요구되는 등 **자본조달 규제 상존**

### <개선 방안>

◆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'사전적·직접적 통제' → 사후적·간접적 감독' 방식으로 전환

- 15 현재 자산운용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, RBC를 통한 사후감독 시스템 강화

- 다만,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비율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

\* (예) 대주주 신용공여(자기자본 40% 및 총자산 2% 중 적은 금액) 등

-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여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RBC 비율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\*로 전환

\* (예) 한도규제 폐지로 동일법인 주식은 7% 초과 소유가 가능해지나, 이 경우 RBC 비율 산정시 위험계수가 현행 12%를 초과(예 : 16%)하도록 제도화

- 16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**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정비**

\* 현장점검시 제기된 실무적 건의내용을 수용·반영

- ①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, **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\***

\* (예)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어도, 해당국 신평社\*\*로부터 일정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 거래 허용 등

\*\*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s(ECAI) : 각국 은행감독당국이 자국의 신용평가사 중 등급부여의 독립성, 객관성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지정

- 미해지된 외화자산의 잔존만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과도한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규제를 완화

- ② 엄격한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

\*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시 '약정금액 → 위탁 증거금'으로 변경하고, 투자한도 예외인정 파생상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

- 17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현행 **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**

\* (예)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시 국내 SPC를 통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

◆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,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**보험 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**

- 18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고, RBC 지급여력 산정시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현행 **15%보다 상향된 25% 적용**

\*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기본자본 인정비율은 33%

- 19 향후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**보험회사의 후순위채권 발행 허용**

◆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와 병행하여, 자산운용상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**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**

㉔ 2020년 예정인 IFRS4 2단계 시행을 대비하여 주요국 준비상황 등에 맞춰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**단계적 제도정비 추진**

○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 및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**보험 부채 적정성 평가제도(LAT) 정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**

\* (예) A보험사 보유계약의 결손금액 5조원, 잉여금액 10조원  
 - 현행 LAT제도 : 결손금(-5) + 잉여금(+10) = +5조원 → 추가적립 불필요  
 - IFRS4 2단계 : 결손금액 5조원만큼 부채(책임준비금) 추가적립

○ '16년상반기중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, 이에 상응하여 보험회사의 **자율적 자본확충 노력 강화** 유도

⇒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**계약자의 혜택을 제고하는 한편,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**

## 라. 판매채널 전면 혁신 (8.27일 기보고)

### <현황 및 문제점>

□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**법인보험대리점(GA)의 긍정적 효과와 병행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 발생**

○ 특히, 대리인이라는 GA의 법적지위로 판매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, 여타 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실정

□ 설명의무 위반, 부당 승환계약 등 중대한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, 이에 대한 **실효성있는 제재 어려움**

\* (보험회사 : 과징금) 위반행위 관련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20% 이내  
 \* (대리점/설계사 : 과태료) 위반행위 건별로 1,000만원 이내

### <개선 방안>

㉔ 일부 보험대리점·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행위 억제

○ 보험대리점에 대한 3개 이상의 상품설명 의무 부과, 부당수수료 수취금지 등을 통해 판매규율 재정립

○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대면교육 의무 부과 등 보험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

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**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·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·감독 강화\***

\* (예) ①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본금 보유의무 부과, ②인력·설비 및 대주주 자격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율, ③경영자회사 규제 부과, ④불완전판매시 과징금등 직접 제재 부과 등

○ 민관합동TF(15.9월~)를 운영하여 실태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쳐, 구체적 입법화 방안 마련 추진

㉔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기존계약 부당 해지(승환)시 **과징금·과태료 등 금전제재 강화**

⇒ 과도한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**공정한 시장 규율 확립**

## 마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
### <현황 및 문제점>

- 현재 가입단계별로 지나치게 복잡다단한 안내자료 제공 등으로 계약자 이해도가 오히려 저하
  - 특히, 온라인 가입시에는 사실상 가입단계별 구분도 무의미
- 위험보장이라는 보험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충분한 상품공급이 미흡하고, 실손의료·자동차보험 등의 안정적 기반 위협

### <개선 방안>

#### ◆ 핀테크 시대에 부응하여 종전 아날로그적 규제를 일제 정비

- ㉔ **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\*를 전면 재정비**
  - \* (예) (상품권유단계) 상품설명서/가입설계서 교부 → (계약체결단계) 청약서 작성 및 약관 교부 → (승낙이후단계) 증권 발송
- ① **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\*하고,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 대면가입 서류를 대폭 간소화\*\***
  - \* 온라인 환경의 경우 상품권유단계, 계약체결단계 및 승낙단계의 구분 곤란
  - \*\* 상품설명서,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를 통합한 1~2장의 통합안내자료로 갈음
- ② **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\* 폐지**
  - \* 현재 온라인상의 보험가입,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의 경우에 적용
- ③ **상품안내자료(상품설명서·가입설계서 등)의 과도한 확인·서명방식을 대폭 간소화\*하되, 해피콜제도\*는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**
  - \*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청약후 10일 이내 전화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사업비, 해약환급금 등 핵심사항에 대해 재확인하는 제도

- ㉕ **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\* 도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접목을 적극 유도**

\* (예) 보험가입자의 운동습관 등을 보험료 산정시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, 보험사기 선별을 위한 정밀한 사회관계망 구축 등

- ㉖ **현행 병원·소비자·보험회사간 아날로그 방식의 보험금 청구·지급절차를 온라인·모바일화 유도(핀테크 활용)**

#### ◆ 소득수준 제고에 따라 다양한 위험보장수요가 나타나는 만큼, 이에 걸맞는 종합 리스크 관리역량 확충 유도

- ㉗ **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** 등을 통해 장기저축성 상품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 유도

- ㉘ **기업성 보험\*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 도모**

\*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빈도는 낮고 건당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서,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적용이 쉽지 않아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율(협의요율)만 사실상 활용

- 기업성 보험에 대한 **보험회사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 허용\***
  - \* 보험회사의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자료 등을 토대로 자사요율 산출을 허용
-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**참조요율·협의요율과 마찬가지로 자체요율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**

\* (참조요율) 해당 보험의 보험업계 전체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 통합집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로 사전신고 면제

\* (자사요율) 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·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

\*\* (협의요율)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제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

◆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**실손의료·자동차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험 생태계 조성**

㉔ 실손보험 가입 및 지급 과정에서 의료과잉·보험사기 등 **도덕적 해이** 방지를 위한 **인프라**를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

① 자동차보험 심사체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**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**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

②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간 협의\*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「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」를 법상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

\* 정부(보건복지부, 금융위)와 관련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금융감독원, 보험개발원)이 참석하여 의료보험 발전방향 논의

③ 의료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**입원일당 가입절차**를 합리적으로 개편

\* 입원일당 보장시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를 의무화하는 절차 신설

㉕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·공급을 위한 **근원적 제도개선 방안**을 검토

○ 자동차 보험금 누수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

\* (예) 과도한 수리비·렌트비로 인해 고가차량에 보험금 과다 지급 → 이로 인한 부담이 저가 차량으로 전가되는 문제 해결 등

○ 중장기적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\* 노력 등을 강화

\*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 강화 등

⇒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**국민들의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·효율적으로 보장**

**6 향후 추진계획**

□ 개혁과제 중 시행령/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**10월중 입법예고하여 16.1/4분기부터 속도감있게 시행**

○ 다만,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·단계적으로 추진

○ 이와 함께 법개정 필요과제는 추가검토를 거쳐 **16년 상반기중 법안을 마련**하고 20대 국회에 제출·통과 추진

□ 「로드맵」의 성공적 추진시 **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(i)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“양적 경쟁” →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통한 “**질적 경쟁**”으로 전환

(ii) 기존 규제체계하에 안주 →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“**무한경쟁 체제**”로 진입

(iii) 종전 연고 중심의 상품구매 → 다양한 상품·서비스 출현에 따라 **소비자들도 꼼꼼하고 정확한 “상품 비교·선택” 노력 필요**

(iv) 사전적인 직접 통제 →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**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감독방식**으로 변화

□ 특히, 금번 개혁을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이 다양한 가격으로 출시됨으로써 **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대폭 확대**될 것으로 기대

<별첨>

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 세부과제별 추진일정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<b>1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</b>				
①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				
①사전신고제 원칙폐지	시행령, 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②신고 심사기준 명확화	규정, 세칙 개정	4월 시행		
② 표준약관제도 전면 정비	TF 구성	규정 개정	하반기 시행	
③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	시행령, 규정, 세칙 개정	4월 시행		
④ 부당상품 제조판매에 대한 사후적 책임 강화	제도개선 안내	시행		
⑤ 민간 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 신설	TF 구성	법규 정비	운영 개시	
⑥ 배타적 사용권 확대	시행령, 협정 개정	4월 시행		
⑦ 경험위험률 조정주기 자유화	시행령, 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⑧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	규정, 세칙 개정	4월 시행		
⑨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	現 30% / 규정 개정	50%까지 허용	폐지	
<b>2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</b>				
⑩ 표준이율 폐지	규정, 세칙 개정	폐지		
⑪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	現 20% / 규정 개정	30%로 확대	폐지	
⑫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정비방안	±25%	±30%	±35%	폐지 검토
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활용				
①온라인 보험슈퍼마켓	운영 개시			
②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③보험상품 표준화 유도(보장범위 비교지수 개발)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④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공시	협회 기준 개정	4월 시행		
⑭ 사후적 건전성 감독 강화				
①LAT 강화	규정, 세칙 개선	'16.4월부터 단계적 시행		
②RBC 정교화	규정, 세칙 개선	'16.4월부터 단계적 시행		
<b>3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</b>				
⑮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	법안 마련	법안 국회제출	시행	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<b>4. 판매채널 전면 혁신</b>				
⑯ 자산운용 규제 개선				
①외국환 관련 규제 개선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②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⑰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자회사 규제 완화	시행령 개정	4월 시행		
⑱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자본인정 비율 확대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⑲ 후순위채권 발행심사 기준 개선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⑳ IFRS4 2단계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	기준서 및 동향 분석	기준서 확정시 제도 개선	단계적 대응	
⑳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 강화				
①법인보험대리점 규율 강화	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②보험설계사 규율 강화	시행령, 규정 개정	4월 시행		
㉑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 검토	입법화 방안 검토	법안 국회제출		
㉒ 부당 모집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	법, 규정 개정	법안 국회제출		
<b>5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</b>				
㉓ 핀테크시대에 대응				
①보험가입 절차 간소화	시행령, 규정 개정	4월 시행		
②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	시행령, 규정 개정	개정 즉시 시행		
③보험가입서류의 확인서명란 정비	시행령, 규정 개정	4월 시행		
㉔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 활성화	민관 협의체 구성			
㉕ 실손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	방안 마련	법안 국회제출		
㉖ 일반보험 활성화 등 보험본연의 기능 제고	개선방안 검토	시행		
㉗ 기업성 협의요율 제도 도입	규정 개정	4월 시행		
㉘ 실손의료보험 운영 인프라 개선				
①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정비	부처협의, 방안마련	법안 국회제출		
②입원일당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의무화	세부방안 검토	규정 개정	시행	
㉙ 자동차보험 안정적 공급시스템 정비				
①단기 개선방안 추진	세칙 개정 등	시행		
②중장기 방안 검토	개선방안 검토	필요시 법규개정 추진		